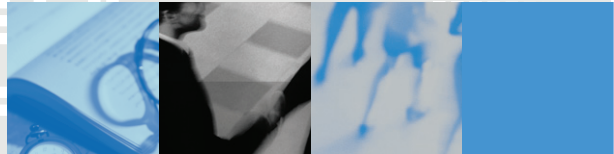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

김영일 (외교안보팀 팀장)

유웅조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2009. 12 . 2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요 약

- ‘핵 무기 없는 세상’(nuclear-free world)을 지향하는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기반한 북핵정책은 ‘협상과 타협’ 그리고 ‘제재’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북·미간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 경쟁점들로 인해, 이 같은 북·미간 접촉이 북한의 비핵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도와 실질적인 보유여부 그리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임
 -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미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핵문제 해결방안과 미국의 입장 간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북·미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기존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던 인도·파키스탄·남아공·리비아·우크라이나 등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했던 구체적인 사례 등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상이한 대응을 엿볼 수 있음

○ 즉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제재를 가했으나 결국에는 해당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한 반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를 상대로는 미국이 끝까지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이를 둘러싼 제 쟁점들 그리고 앞서 본 5개국의 핵문제 해결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볼 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첫째,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환·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임
 -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환·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즉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인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핵능력 보유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환·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면 북핵 위기관리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상황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단기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과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압박 방안이 상대적으로 주가 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셋째, 오바마 정부가 과거 우크라이나 핵문제 해결에 적용되었던 ‘협조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책 마련을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CTR 프로그램은 닌 루가 프로그램(Nunn-Lugar program)으로도 불리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에 배치된 구소련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자국의 핵과학자 및 기술자 교육과 재취업, 상당한 금전적 보상 등을 획득한 바 있음
 - 따라서 북한에 적용 가능한 CTR 프로그램들을 상정하여 개별 프로그램별로 우리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방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차 례

□ 요약

I. 들어가며 / 1

II.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 3

- 1. 비핵화 정책의 기본 인식과 3단계 실천 방안 3
- 2.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평가 6
- 3.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 8

III.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불가측성(不可測性) / 12

- 1. 북한의 핵무기 포기의사의 불명확성 12
- 2.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사실 여부 17
- 3. 북한의 대미협상 기조의 비현실성 20

IV. 미국의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문제에의 적용 / 22

- 1. 핵무기 보유 인정 사례 22
 - 가. 인도의 핵무기 보유와 ‘미·인도 간 민간 핵협정’ 22
 - 나.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와 미국의 묵인 27
- 2. 핵무기 포기 사례 32
 -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과 자발적 핵포기 선언 32
 - 나. 소련연방의 해체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및 포기 사례 35
 - 다. 리비아의 핵무기 보유시도와 포기 39
- 3. 핵문제 해결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43
 - 가. 핵무기 보유 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43
 - 나. 핵무기 포기 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44

V. 시사점과 대응방향 / 47

□ 참고문헌

I. 들어가며

- 스티븐 보즈워스(Stephan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2월 8일 북한을 방문했음¹⁾
 - 이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그간 미국 정부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북·미양자회담을 거부해온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됨
 - 한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은 2009년 11월 19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수 년 동안 계속 제기해온 북·미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의가 열려있다”고 언급함
 - 이 발언은 미국의 최고위급 당국자가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이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드문 경우라는 점에서 향후 북·미간의 대화진전과 관계발전의 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려나가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이 같은 기대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선불리 전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가 제대로 밝혀진바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고, 특히
- 1) 이번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공개된 바 없음. 단지 이번 회담이 북·미간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임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국으로의 핵확산만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주요한 사례로 부각되었던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등의 핵 문제 해결사례들을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북핵문제의 진행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제2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을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불가측성에 관해 정리함
 -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관심대상이었던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등의 핵문제 해결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 사례들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 봄
 - 제5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함

II.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1. 비핵화 정책의 기본 인식과 3단계 실천 방안

- 오바마 정부 외교정책²⁾의 주요한 항목 중의 하나인 핵정책은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free world)으로 정리된 바 있으며, 이 같은 핵정책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함³⁾
 - 첫째, 냉전체제가 붕괴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핵전략은 냉전시기의 적대국이었던 러시아나 중국 등과 같은 적대국의 핵공격을 전제로 한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임
 - 둘째, 21세기의 안보위협은 세계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비국가 단위에까지도 핵물질, 핵관련 노하우(know-how) 및 핵기술이 확산되는 것임

2)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은 2010년에 발간예정인 ‘핵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됨. ‘핵태세 보고서’는 지난 1994년과 2002년에 발간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클린턴과 부시 정부의 핵전략을 구체화한 바 있음.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완전한 내용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연설을 통해 새로운 핵전략의 대체적인 구상을 천명한 바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과 이와 관련한 기타자료를 토대로 오바마 정부의 핵전략을 정리함

3) Andrew Grotto and Joe Cirincione, 2008, "Orienting the 2009 Nuclear Posture Review",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www.americanprogress.org/issues/2008/11/pdf/nuclear_posture.pdf>; Oliver Stuenkel, 2009, "More than a dream? Obama's vision of a nuclear arms-free world," Konrad Adenauer Stiftung Washington Office <www.kas.de/proj/home/pub/1/2/dokument_id-16799/index.html>

- 셋째, 핵무기는 공격 또는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 가령 국제테러행위에 대한 대응이나, 이란 및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는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 반면에 핵폭탄이나 핵분열물질(fissile materials)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실수나 오용, 또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핵무기는 미국의 안전을 담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음
- 넷째, ‘다극화’(multipolar)와 ‘탈 미국’(post-American) 세계질서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이중적 핵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의 역할축소를 주장하는 입장이 강해짐
 - 가령 미국은 NPT 체제에 대해서 순응적이지 않으면서 타국에게는 NPT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의 핵보유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한편 기타 국가들의 핵개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음
 - 따라서 미국이 규범에 충실하고 핵무기를 감축해야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 다섯째, 미국은 안보상의 문제없이 대폭적인 핵무기 감축이 가능함
 - 1,000기의 핵무기만으로도 러시아와 같은 국가의 공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
 - 따라서 6,000기에서 1,000기로의 핵무기 감축은 미국의 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미국이 핵무기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오바마 정부의 ‘핵없는 세계’를 위한 구상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⁴⁾
 - 첫 단계는 핵무기를 실제 전쟁수단이 아닌 억지수단(deterrent tool)⁵⁾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핵탄두를 1,000기 규모로 감축할 뿐만 아니라 바로 발사될 수 있도록 준비된(‘hair trigger alert’) 상태를 해제함⁶⁾
 - 두 번째 단계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핵물질 생산을 종결토록 하고 IAEA의 권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이하 CTBT)⁷⁾을 비준하고 ‘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협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이하 FMCT)⁸⁾을 완료함

4) Oliver Stuenkel. 앞의 글.

5) 이는 핵무기를 핵무기에 대한 억지수단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Michel S. Gerson, 2009, "Rethinking U.S. Nuclear Posture"(September 29, 2009),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6)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은 메드베데브(Dmitri A. Medvedev) 러시아 대통령과 '전략무기 감축협상'(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이하 START)을 통해 현재 2,200기의 전략핵탄두를 7년 내에 1,500 ~ 1,675기 사이로 감축하고, 1,600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 탑재 미사일과 폭탄은 500 ~ 1,100기로 감축하기로 함. 이번 START는 1991년 7월 부시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이 2009년 12월 5일 만료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조약임. *New York Times* (July 7, 2009).

7) 동 조약은 1996년에 성립되었으며 현재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는 44개국 중 인도, 북한, 파키스탄을 제외한 41개국이 서명했으며, 이 중에서 국내 비준을 통과한 국가는 31개국에 불과함. 미국의 경우도 서명했으나 국내에서 비준을 받지 못했음

8) 동 조약은 1993년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했음

- 이 단계에서 IAEA 구조내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비핵보유국의 핵분열물질을 검증, 사찰 및 조사하도록 함
 - 또한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핵연료 주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인(incentives)을 약화시키기 위해 ‘핵연료 은행’(nuclear fuel bank)⁹⁾을 설립하여, 농축된 핵연료를 제공함
- 세 번째 단계는 제1단계와 제2단계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 모든 핵보유국들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함

2.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평가

- 그러나 이 같은 오바마 정부의 ‘핵없는 세계’ 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이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음
 - 첫째, 미국의 핵감축 정책은 러시아의 대미인식 및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음¹⁰⁾
- 이 관점에 따르면 구소련이 붕괴된 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러시아 강대국 이데올로기’(Russian great power ideology)로 대체되었는 바, 동

9) 핵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이 2007년에 이미 제안한 바 있음. 유럽연합은 2008년에 이를 지지했음. 또한 지난 2009년 4월 6일 카자흐스탄이 이 은행을 유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음. 「에너지 타임즈」(2008년 12월 09일), 「연합뉴스」(2009년 4월 7일).

10) Ariel Cohen, 2009, "Dangerous Trajectories: Obama's Approach to Arms Control Misreads Russian Nuclear Strategy," *Backgrounders*, No. 2338, The Heritage Foundation.

이데올로기는 과거에 독일을 상대하던 짜르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유물로, 냉전시기에는 미국과의 핵 균형전략을 통해 지속되었으며, 푸틴집권과 동시에 재등장함

- 이 맥락에서 현재 러시아는 핵무기를 아직도 전쟁수단으로 인식하며, 미국을 주요한 적대국으로 하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음
- 따라서 러시아의 미국과의 전략핵무기 감축은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한 핵 균형전략에 불과함
- 둘째, 미국의 핵무기 감축이 핵 비확산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 같은 주장은 오바마 정부 출범이전에 제시된 의견들로, 이에 따르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한다는 선언을 하더라도, 핵무기 보유를 통해 자국의 안보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국가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¹¹⁾
 - 이 맥락에서 미국의 핵감축과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비핵화는 연관성이 낮음. 왜냐하면 이들 ‘불량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의도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며, 이 같은 안보의 필요는 미국의 우월한 재래식 무기 때문임¹²⁾
 - 따라서 미국이 핵무기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불량국가’들이 재래식 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음

11) Harold Brown and John Deutch, “The Nuclear Disarmament Fantasy”, *The Wall Street Journal*(November 19, 2007). <<http://online.wsj.com/article/SB119542524645797257.html>>.

12)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Repeal of the Prohibition on Low Yield Warhead Development on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Its Nonproliferation Objectives” March 14 (report submitted to Congress in response to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4).

- 셋째,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현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핵무기 감축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일 수 있음¹³⁾
- 이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등은 자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노후화된 핵무기를 현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를 감축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음

3.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

-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은 ‘협상과 타협’ 그리고 ‘제재’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⁴⁾
 - 첫째는 핵확산을 통해 테러분자들과 테러지원국의 손에 핵무기와 핵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둘째는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과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음.
-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과도 연결되어 있음.

13) Hope is Not A Foreign Policy, “Hope is Not A Nuclear Strategy”
<<http://www.hopeisnotforeignpolicy.org/2009/10/14/hope-is-not-a-nuclear-strategy/>>

14) 백학순, 2009,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정세와 정책」, p.15

- 비록 오바마 정부는 완결된 형태의 북핵정책을 제시한 바 없으나, 오바마 대통령 및 정부당국자들의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그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미국의 북핵정책의 기조는 앞서 본 바와같이 ‘협상과 타협’ 그리고 ‘제재’를 혼합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⁵⁾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양자대화를 진행함
 - 북·미 양자회담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이 요청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8월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억류 여기자 석방을 위해 방북 했을때 북측이 요청한 사항임
 - 이에 대응하여 미국측은 지난 11월 10일 필립 크롤리(Philip J. Crowley)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브리핑을 통해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미 행정부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¹⁶⁾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방문 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석상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12월 8일에 북한을 방문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둘째, 이 같은 북·미양자대화는 ‘6자 회담’ 틀내에서 이루어 질 것임¹⁷⁾

15) 이는 오바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Smart Power’ 전략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됨. ‘Smart Power 전략’은 군사 및 경제적 제재 등 ‘경성권력’(hard power)과 무역, 외교, 대외원조, 문화 등의 ‘연성권력’(soft power)을 균형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활용하여 국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드높이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략을 의미함.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08,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Suzanne Nossel, 2004, “Smart Power”, *Foreign Affairs*.

16) 「연합뉴스」(2009년 11월 11일)

- 이 점에 대해선 이미 수차례 강조된 바 있으며, 최근 ‘북·미양자대화’(2009. 12. 8-9)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발표에서도 “북·미 양자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6자 회담’에 복귀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하다고 강조된 바 있음
- 또한 오바마 대통령도 ‘6자 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틀임을 강조한 바 있음
- 셋째,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 점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월 12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과정에 들어서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¹⁸⁾
- 넷째,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강구함
 -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방문 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간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취한 다음 대화에 복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다시 대화의 장을 뛰쳐나가 더 큰 양보를 요구했던 과거의 행태를 중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이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 때와 같은 단계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definitive and comprehensive resolution)을 주장하였음¹⁹⁾

17) Hillary Clinton, "Remarks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Oct. 21, 2009. (www.state.gov/)

18) 「연합뉴스」(2009년 11월 14일)

19) “Obama talks tougher on nuclear sanction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2009년

- 즉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미 관계정상화를 비롯한 제반조치를 교환하는 방식임

11월 20일)

Ⅲ.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불가측성(不可測性)

1. 북한의 핵무기 포기의사의 불명확성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 가령 북핵문제에 대한 ‘낙관론’에 따르면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무기를 수단으로 하여 체제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반해 ‘비관론’에 따르면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통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북한체제를 보호 및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코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임
- 구체적으로 전자의 관점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이후 발생한 북핵위기의 본질을 ‘미국의 패권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 사이의 충돌’ 혹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규범과 북한의 주권규범 간의 충돌’로 인식함²⁰⁾

20) 서보혁, 2003,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정체성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pp. 199-217.; 허문영, 2002, “북한의 핵개발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대미협상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세분석』, 통일연구원; 김근식·서보혁, 2007, “대북포용정책과 강경정책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pp. 105-127.; 이승철·오일환, 2006, “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한국의 대북·대중·대러시아 전략 방향 모색”, 『중소연구』, 제29집, 제4호, p. 21.; 홍현익, 2008,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1호, p. 50.

- 이 맥락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응에 따라 갈등 혹은 협조적 입장을 취했다는 주장임
- 예를 들면 1991년 남한에서의 핵무기 철수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에 대응하여 북한은 동년 12월 남한의 비핵화선언 및 IAEA와 핵안전조치에 서명을 한 반면에,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고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 했을 때, 북한은 NPT 탈퇴 의사를 밝히고 사찰 약속을 거부한 바 있음²¹⁾
- 또한 1994년 10월 21일 체결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 이하 ‘제네바 합의’)로 제1차 북핵위기가 해결되었으나, 미국의입장 변화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함
 - 구체적으로 2001년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에서 ‘제네바 합의’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2002년 10월 17일 미국은 켈리(James Kelly) 차관보 방북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이하 HEU)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함
 - 이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제네바 합의에 의해 유지되던 영변 핵시설의 봉인 및 감시장비 철거를 요구하고, 21일부터 실제로 핵 동결 해제조치를 감행함
- 마찬가지로 2005년 9월 13일의 ‘6자 회담’을 통해 마련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기도 했었으나, 9.19

21) 일부 학자들은, 당시 북한이 나름대로 유연성을 가지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미국 보수파의 강경책으로 인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이 좌절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삼성, 1994,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외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4집, 2호, p. 186.

공동성명 발표 전후로 미국은 북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

- 가령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기 3일 전에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을 문제 삼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이하 BDA)의 북한계좌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고, 힐(Christopher Hill) 대표는 공동성명 합의 직후 회담 폐막연설을 통해 경수로 제공조항에 유보입장을 밝혔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북-미협상을 통한 금융제재 문제 해결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양자회담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이하 PSI)의 대북적용 등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핵문제를 위한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짐
- 이와 같이 북한은 미국의 조치에 따라 핵문제와 관련한 협조와 갈등정책을 펼쳐왔으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핵무기 포기 결정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임
- 다른 한편 후자의 관점, 즉 비관론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어떠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 첫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적으로 대남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으로, 이 관점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시도는 1950년대 북한의 핵개발에서부터 일관되게 추진된 것임.²²⁾

22) 윤여길, 2007, “북한은 20kt급 핵탄두 최소 10-25개 보유추정”, 「한국논단」, pp. 18-22.; 김태우, 2004, “북핵문제의 본질과 6자 해법”, 「행정논집」, 제30호, p. 39.

- 실제로 북한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주요대학에 핵 관련 학과를 설치²³⁾하는 한편, 1950년대 중반 소련이 주도한 ‘핵 연구 소 연합조직에 관한 협정’에 참여하고 모스크바의 핵개발 연구소인 ‘듀브나 (Dubna) 연구소’에 핵개발 전문인력 20-30명씩을 매년 파견하여 핵개발을 위한 기술능력을 키우기 시작했음²⁴⁾
- 이와 함께 1960년대 초반 북한은 소련의 도움으로 영변에 핵 연구 센터와 IRT-2000이라고 불리는 2MWt 규모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1965년에 이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함으로써 핵능력을 키우기 시작했음
- 즉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전쟁 전후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따른 소련진영의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지속되어 왔으며, 이 같은 북한의 핵개발이 1990년대에 국제적인 문제로 표면화된 것으로 파악함
- 결국 이 관점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는 한반도에서의 세력 극대화의 일환으로서 중국적으로는 대남 적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함²⁵⁾

23) 예를 들면 1949년 김일성대학 물리학부에 핵물리학과를, 1957년에는 김책공대에 핵 공학부를, 그리고 1963년에는 과학원 산하 평성 이과대학에 핵 물리학부를 설치하였음. 신재곤, 2006, “핵무기 개발 태동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합참」, 제 21호, pp. 18-19.

24)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6년 자료에 따르면 핵개발 핵심고급인력 200명, 전문인력 3천명, 그리고 기술 인력이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25) Stephen Bradner, 2001, "North Korea's Strategy," in Henry D. Sokoloski, ed. *Planning for a Peaceful Korea*,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p. 40.; Nicholas Eberstadt, 2009, “What Is Pyongyang Really Up To?”, *The Journal of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http://blog.american.com/?p=3960>> ; 전성훈, 2008, “김정일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 핵문제”, 「북한경제리뷰」, 9월호, p. 9.

- 둘째는 19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분열로 인하여 북한의 안보는 북한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미국 등 강대국의 일방적 영향력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상정했다는 주장임²⁶⁾
 - 북한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증강해 왔으나, 1990년대 전후로 하여 북한을 도와줄 소련연방이 분열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이 같은 재래식 무기 중심의 국방력 강화노력은 한계에 봉착하게 됨
 - 따라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무기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임
 - 이 맥락에서 1993년과 2003년에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발생한 제1·2차 북핵위기 국면에서 6자회담(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틀 내의 협상과정을 통해 마련된 ‘제네바 합의’(U.S.-North Korea Agreed Framework)나 ‘2·13 합의’ 등은 북한의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연전술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함
 -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 보유는 필수사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임
- 셋째는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보상이 북한의 현 체제 유지를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임²⁷⁾

26) 신성택, 2009, 「북핵리포트」, 서울: (주)뉴스한국; Victor D. Cha, “What Do They Really Want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4, pp. 119-138.

27) 황주호·문주현, 2008, “북한의 핵능력 증대전망과 대책”,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pp. 9-27.

-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국제사회의 보상이 이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행위를 취함으로써 또 다시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북한사회의 개혁·개방,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같은 변화는 현 북한체제의 붕괴를 의미함
- 따라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임
-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참여는 핵무기포기까지를 포함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국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 좀 더 발달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기 위한 지연전술에 불과함
- 따라서 정책적으로 볼 때 북한체제의 전환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임

2.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사실 여부

-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의 불투명성을 들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 우선 미국 통합군 사령부²⁸⁾(United States Joint Forces Command:

28) 미국 버지니아 주 노포크에 본부가 있는 통합군 사령부는 10개의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로서 주요 임무는 실험과 교육을 통해 미군의 변환을 선도하

USJFCOM)는 합동작전환경 평가보고서인 「합동작전환경 2008(The Joint Operating Environment 2008)」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 “아시아 대륙에는 이미 5개의 핵보유국이 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러시아이다. 게다가 핵보유국의 문턱에 선 국가가 셋 있는데 바로 한국, 대만, 일본이다. 이들 국가들은 신속하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²⁹⁾
- 위 합동작전환경 평가보고서는 미 국방부 전체의 통합개념 개발과 실험 내용을 공지(公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미래의 통합군사령관들과 기타 국가안보분야의 지도자들 및 전문가들에게 미래의 추세, 충격, 정황 및 함의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 따라서 위 보고서를 통해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북한 핵문제는 이제 군사적 관리 대상이고, 정치·외교적 해법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³⁰⁾

□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09년 10월 21일 미국평화연구소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 주최 강연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되돌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³¹⁾는 발언을 통

고, 특히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구성된 합동훈련, 합동작전 운용, 합동개념 개발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 미군의 합동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다.

29) "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 China, India, Pakistan, North Korea, and Russia. Furthermore, there are three threshold nuclear states, South Korea, Taiwan, and Japan.", United States Joint Forces Command, *The Joint Operating Environment 2008*, p.32

30)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인터뷰 내용. 「D&D Focus」, 2009년 1월호, p.30.

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³²⁾

- 이어 클린턴 장관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NPT가 인정하는 핵 보유국들에게 NPT 체제의 와해를 저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뒤,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을 좌절시키는 것이야말로 비확산 체제 유지에 결정적 요소임을 언급하였음

□ 이에 반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미국의 북한전문가 리언 시걸(Leon V. Sigal)은 지난 6월 11일 미상원의외 교워위원회 증언에서 북한 핵보유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했음
- 시걸에 따르면 북한이 한결같이 핵무장을 추구해왔다는 워싱턴의 지배적인 생각은 다음의 두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못함
 - 첫째, 북한이 핵무기 제조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여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는 것인데, 북한은 1991년 가을에 핵재처리를 중단했고, 이후 2003년까지 재개하지 않았음. 그리고 2007년에 재처리를 다시 중단하였고,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량을 예상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였을 것임

31)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iled to preven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We are now engaged in diplomatic efforts to roll back this development.” Hillary Clinton, 2009, "Remarks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www.state.gov/)

32) 북한의 핵무기 보유사실에 대한 주장은 이미 그 이전부터 제기된바 있음. 가령 2007년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는 1990년대 말에 이미 1개에서 2개, 그리고 2007년에는 10개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Bruce Klingner, 2007, "North Korea Nuclear Weapons Falls Short", *WebMemo*, No. 1358, The Heritage Foundation, p.2.

- 둘째, 북한이 핵탄두 운반용 탄도미사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는 것임.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년간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인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각각 세 차례만 실시하였음³³⁾

3. 북한의 대미협상 기조의 비현실성

-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북한의 대미협상 기조의 비현실성을 들 수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북한은 북·미외교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비핵화 전 단계로 간주한다는 점임
 -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Selig Harrison)이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원조 및 무역금융지원의 댓가로 플루토늄 저장량을 IAEA에 이전할 것을 제의했을 때 이를 거절한 바 있음
 - 둘째,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33) Leon V. Sigal, "A Strategy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June 11, 2009).

-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2007년 이후 줄곧 주장해왔고,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조건하에서 미국과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고, 경제·금융상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입장임
 - 북한 군부를 포함한 북한의 관리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는데 있음을 시사했고,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
- 셋째, 북한 당국은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되어야 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임
-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에는 남한 내부와 한반도 주변의 미군의 구성과 주요 작전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포함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음
- 넷째, 북한 당국은 모든 핵 검증과 조사활동은 미군기지를 포함한 남한 내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이 이 같은 대미협상기조를 고수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임

IV. 미국의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문제에의 적용

- 오바마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은 대체로 ‘유인’과 ‘제재’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진행된 기존의 핵문제 해결사례는 북핵문제 해결방향의 주요한 유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자체 핵개발과 핵무기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던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과 소련의 해체로 독립국이 되면서 소련의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리비아’ 등이 있음
- 이 중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는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음

1. 핵무기 보유 인정 사례

가. 인도의 핵무기 보유와 ‘미·인도 간 민간 핵협정’

- 인도 자체의 핵개발 역사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되기 3년 전인 194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감³⁴⁾
- 1945년 인도 핵학자인 호미 바하(Homi Jehangir Bhabha)가 도랍타타기금(Dorab Tata Trust)으로 ‘타타 기반연구원’(TIFR: Tata Institute of Fundamental Research)을 설립함

34) Raj Chengppa, 2000, *Weapons of Peace, India*, HarpenCollins Pub., p. 79

- 이어 독립한 직후인 1948년에 인도 정부는 ‘인도 원자력에너지위원회’(Indian Atomic Energy Commission, 이하 IAEC)를 구축하고 핵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함
- 이 같은 핵연구가 실질적인 핵개발로 진전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인데, 이 때까지만 해도 인도의 이 같은 핵개발이 핵무기 개발로 전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³⁵⁾
- 1954년에 트롬베이에 원자력에너지구축 시설(Atomic Energy Establishment, Trombay)을 설립하고, 1955년에 캐나다가 제공한 인도의 최초 원자로인 40MWt 용량의 CIRUS(Canada-India Reactor, US) 연구원자로가 건설·가동됨
- 이 원자로를 위해 미국은 21톤의 중수(heavy water)를 제공함
- 그러나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분쟁에서 패배했을 때까지만 해도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음
 - 이 당시 인도의 수상이었던 네루는 “우리는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더라도 핵무기 생산에 관심이 없다. 이후의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 1964년 5월에 핵무기 개발에 반대해 온 네루가 사망하고, 같은 해 10월 중국이 핵무기 실험을 감행한 이후부터 핵개발에 관한 인도의 입장은 크게 변화됨

35) Mitchell Reiss, 1995,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T. V. Paul, 2000, *Power Versus Prudence: Why Nations Forgo Nuclear Weapons*,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네루의 후임자인 샤스트리(Lal Bahdur Shastri) 총리는 영국 및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방안이 실패로 끝나자, 상황에 따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하 핵폭발 프로젝트(Subterranean nuclear explosion project; SNEP)계획을 승인함.³⁶⁾
- 하지만 1966년 샤스트리와 인도 핵개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호미 바바(Homi Bha Bha) 인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인도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한동안 정체상태에 놓이기도 함
- 인디라 간디 수상 재임시기인 1971년에 발발한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인도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전환점이 됨
-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 파키스탄의 편에 섰던 미국이 제7함대를 벵갈만까지 진출시키자 인도는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됨
- 간디 수상은 1972년 10월 핵실험 준비를 승인하였고, 2년 후인 1974년 라자스탄 주 포크란에서 ‘평화적 핵폭발’(peaceful Nuclear explosion)이라고 명명된 15kt 규모의 지하핵실험을 단행함
- 그러나 당시 간디 수상은 이 같은 핵실험은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님을 밝힘
- 이 같은 인도의 핵실험은 평화적 목적으로 한 핵기술이라 하더라도 핵무기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킴³⁷⁾
-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일련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36) 위의 글.

37) Paul K. Kerr, 2009, “U.S. Nuclear Cooperation with India”, *CRS Report for Congress*, p. 2.

- 가령 1976년의 시밍턴 수정안(Symington Amendment), 1977년의 글렌수정안(Glenn Amendment), 1978년 핵무기 핵확산방지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1985년 프레슬러 수정안(Pressler Amendment)등과 같이 민감한 핵시설을 추구하는 나라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통해 핵확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침³⁸⁾
- 또한 1975년에 국제적인 다국적 모임인 ‘핵공급그룹’(Nuclear Supplier Group, 이하 NSG)³⁹⁾을 구축하고 1978년에 평화적 핵발전을 위한 공급된 핵관련 물품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함
- 이와 함께 1980년 이후 미국은 인도에 대한 핵관련 물품 수출을 중지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1998년 5월 11일과 13일에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핵실험을 통해 공개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함
- 이에 대해 미국은 경제·군사 제재조치⁴⁰⁾를 취하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 및 학계 내에서 인도 핵개발에 대한 제재조치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략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인도의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활발해짐⁴¹⁾

38) 김태우, 2005, “이란 핵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67권, p. 79.

39) 200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6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www.unclearsuppliers.group.org> 참조.

40)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Dianne E. Rennack, 2003, *India and Pakistan: U.S.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41) 김명진, 2006, “최근 미·인도 협력관계 구축동향”, 「주요국제문제분석」, p. 4.

- 제재조치에 반대하는 논거는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인도를 비핵화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가까운 장래에 인도가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폐기하고 비핵보유국으로서 NPT에 서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임
- 또한 인도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음⁴²⁾
- 미국은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직후 이들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했음
- 그리고 미국은 양국간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무기판매와 기술이전에 관한 제한들을 상당정도로 완화시킴⁴³⁾
- 특히 2000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인도 사이에 2년여에 걸쳐 외교부장관급의 고위급 전략대화가 14회 진행되었으며, 2004년 1월 미국·인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됨⁴⁴⁾
- 2005년 7월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과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인도의 민수용 핵기술에 대한 제재 해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후로, 2006년 3월 2일 부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양국 정상이 핵

42) Richard N. Haass and Morton H. Halperin, 1998, "After the Tests: U.S. Policy Toward India and Pakist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 5.

43) Kurt Campbell and Robert J. Einhorn, 2004, "Concluding Observation" in Kurt M. Campbell, Robert J. Einhorn, Mitchell B. Reiss, eds. *The Nuclear Tipping Point: Why States Reconsider Their Nuclear Choic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s, p. 318.

44) 김명진, 앞의 글, p. 4.

협력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인도의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됨⁴⁵⁾

- 미국·인도 간 핵협력 협정의 핵심은 민간 핵시설로 분류된 인도의 22개 핵시설 중 14개 시설에 대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에 걸쳐 IAEA 안전조치를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며, 나머지 8개 군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핵물질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임⁴⁶⁾

나.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와 미국의 묵인

- 파키스탄 핵개발의 역사는 1950년대 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같은 핵개발이 핵무기 개발로 전환된 것은 1972년에 발생한 인도와의 전쟁에서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을 상실하고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짐⁴⁷⁾
- 즉,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은 인도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고 인도에 비해 뒤쳐진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1978년 말 파키스탄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건설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으나, 파키스탄 정부가 이 사실을 부정하자 미국은 시밍턴 수정안(Symington Amendment)⁴⁸⁾에 의거해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원

45) 이상현, 2006, “미국-인도 핵 협력과 강대국 신전략구도”, 「정세와 정책」, p. 6.; 김태우, 2006, “미-인도 핵합의, 새로운 핵질서의 서막”, 「주간국방논단」, 제 1110호, p. 4.

46) Arms Control Association. *Revised Indo-U.S. NSG Draft*. (September 2008)

47) Paul K. Kerr and Mary Beth Nikitin, 2009, "Pakistan's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Securit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p. 2.

조 규모를 축소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함⁴⁹⁾

- 그러나 1979년 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 정책의 우선 순위는 변화를 맞게 됨
 -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대외원조를 오히려 그 이전보다 확대하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1982년에는 시밍턴 수정안에 의거한 제재조치도 6년간 유예함⁵⁰⁾
- 이 시기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완성된 것으로 알려짐
 -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인 칸(Abdul Qadeer Khan) 박사는 1984년 말에 파키스탄이 핵을 폭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밝힌 바 있음⁵¹⁾
 - 또한 1987년 미르자 아슬람 베그(Mirza Aslam Beg) 육군 참모총장은 파키스탄이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함
-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핵폭발 장치 보유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파키

48) 1976년에 시밍턴(Stuart Symington)과 글렌(John H. Glenn)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의해 마련된 대외원조법 수정안으로 NPT의 비회원국이나 NPT의 모든 보호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국가가 농축시설 또는 재처리 시설을 매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제 및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49) Alex Wagner, 2001, "Bush Waives Nuclear-Related Sanctions on India, Pakistan", *Arms Control Today*, vol. 31, no. 8, p. 20.

5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se 79-2. U.S. vs. Pakistan, *Case Studies in Sanctions and Terrorism*. <<http://www.iie.com/research/topics/sanctions/pakistan.cfm>>

51) Paul K. Kerr and Mary Beth Nikitin, 2009, "Pakistan's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Securit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p. 3.

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를 금지하도록 하는 '프레슬러 수정안(Pressler Amendment)을 통과시킴⁵²⁾

-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동법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는 1990년 10월에 대파키스탄 제재조치를 발동함
- 이 같은 조치는 1989년 아프간에서 소련이 물러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⁵³⁾
- 파키스탄은 1998년 5월에 먼저 인도가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하자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보유국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함⁵⁴⁾
-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인도가 핵실험을 감행한 지 2주 후에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 보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인도와 함께 핵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함
- 이에 대해 미국은 비핵국가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글렌수정안(Glenn Amendment)을 발동하여 파키스탄에 압박을 가함⁵⁵⁾
- 한편 G-8 국가들은 파키스탄에 대한 국제기구의 비인도적인 차관을 동결키로 함. 유엔 안보리도 이 같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함

52) Alex Wagner, 앞의 글

53) Richard P. Cronin et. al., 2005, "Pakistan's Nuclear Proliferation Activitie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U.S. Policy Constraints and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p. 9.

54)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앞의 자료.

55) Leonard Spector, "Status of U.S. Sanctions Imposed on India and Pakistan," <<http://cns.miis.edu/research/wtc01/pakind.htm>>

- 이에 파키스탄은 핵실험 유예를 선언함
-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제재로 파키스탄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제반 경제제재 조치는 취소됨⁵⁶⁾
- 우선 1998년 7월에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중 곡물수출 금지조치는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
- 또한 동년 11월에는 무기를 제외한 파키스탄의 대외 경제활동에 취해진 제반 제재조치를 취소함
- 마찬가지로 IMF도 파키스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재개함
- 그러나 1999년에 무샤라프(Pervez Musharraf)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다시 취해짐
- 그러다가 2001년 9·11사태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제재조치를 철회하면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는 묵인됨⁵⁷⁾
-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은 “파키스탄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회도 이 같은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음
- 이 당시 미국 정부는 대파키스탄 제재조치의 철회 이유를 테러와의 전

56) 이 같은 결정은 파키스탄에 대한 곡물수출 제재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미국 내 농민들의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음.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앞의 자료 참조.

57) 2001년 9월 24일 대 파키스탄 제재조치 철회 직후에 미 국무부 대변인 바우처는 “미국은 미국을 지원하는 국가를 지원한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라고 언급함. Alex Wagner, 2001, “Bush Waives Nuclear-Related Sanctions on India, Pakistan”, *Arms Control Today*, vol. 31, no. 8, p. 20.

쟁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파키스탄 정부 지원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파키스탄의 경우는 이 같은 미국의 대테러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짐⁵⁸⁾
- 한편 2004년 2월 칸 박사가 국제 핵 밀매조직을 통해 이란, 리비아, 북한에게 핵농축시설과 기술을 제공해 왔음을 시인함으로써 파키스탄은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로서의 책임을 지게 됨
- 그러나 미국은 이를 칸 박사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파키스탄 정부와 공조하여 칸 박사의 핵 사슬(Network)을 저지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이 같은 핵 사슬은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⁵⁹⁾
-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2001년 9.11 사태 발생이후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미국측에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자체적으로 자국의 핵물질 및 핵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이며, 미국 측은 이 같은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대테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⁶⁰⁾
- 이 밖에도 미국 의회는 파키스탄의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경제발전 등을 위한 법안들을 상정해 놓은 상태임

58) Paul K. Kerr and Mary Beth Nikitin(Oct. 15, 2009), 앞의 글, p. 9.

59) Richard P. Cronin et. al.(2005), 앞의 글, p. 25.

60) Paul K. Kerr and Mary Beth Nikitin(2009), 앞의 글.

2. 핵무기 포기 사례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과 자발적 핵포기 선언

-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의 핵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1948년에 ‘원자력에너지위원회’(Atomic Energy Board: AEB)가 설립되면서 본격화 됨
- 1957년에 미국은 남아공에 핵반응로(일명 SAFARI-I)를 제공하는 한편, 과학자들과 기술자를 교육시키고, 핵반응로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함⁶¹⁾
 - 이 핵반응로는 1965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은 1976년까지 미국이 제공함
 - 이를 바탕으로 남아공은 평화적 목적의 핵연구와 개발프로그램의 기초를 다지게 됨
- 남아공은 1960년대 초반부터 비밀리에 우라늄농축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우라늄 농축시설인 일명 Y Plant를 1974년에 건설했음⁶²⁾
 - 또한 당시 남아공 수상인 볼스터(John Vorster)의 결정에 따라 1971년부터 핵 기폭장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칼라하리 사막(Kalahari Desert)에 핵실험장소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⁶³⁾

61) Roy E. Horton III, 1999, "Out of (South) Africa: Pretoria Nuclear Weapons Experience", *USAF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Paper #27*.

62) David Albright et al., 1997,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1996: World Inventories, Capabilities, and Policies*, SIPRI Monograph,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UK, Oxford Univ. Press, pp. 379-380.

63) Waldo Stumpf, 1995, "Birth and Death of the South African Nuclear Weapons

- 이후 1978년에는 최초의 핵폭발 장치가, 그리고 1982년에는 두 번째 핵폭발 장치가 제조되었으며, 1989년 드 클러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6개의 완성된 핵무기와 미완성 상태의 7번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⁶⁴⁾
- 이 시기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은 남아공의 안보적 위협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음
 - 가령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모잠비크와 앙골라가 내전에 휩싸이고, 소련과 쿠바가 이에 개입하자 남아공은 이들 공산주의 국가와 대치하게 되었고, 남아공의 인접국인 나미비아와 짐바브웨(구 로데시아)에서는 친소 공산반군에 의한 게릴라전 위협에 직면하게 됨⁶⁵⁾
 - 또한 아프리카 주변지역에서의 공산주의의 세력의 팽창과 더불어 시대착오적인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야기된 남아공의 국제적 고립상태는 안보위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그러나 이 시기까지 남아공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었음
 - 단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었음
 - 구체적으로 1970년대 UN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제재는 1980년대부터는 서방기업과 다국적 은행 등이 대 남아공 투자철폐

Programme", presentation given at the conference "50 Years After Hiroshima", organized by Unione Scienziati per il Dsarmo and held in Castiglioncello, Italy.

64) Mitchell Reiss, 앞의 글, p. 33-34.

65) T. V. Paul, 앞의 글, p. 115.

회 압력을 가하는 쪽으로 선회하였음⁶⁶⁾

- 특히 미국 의회는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신규 은행대출 금지, 경찰 및 군에 대한 무기류 판매금지, 남아공 광물 및 국영기업체 생산물의 수입금지 등을 명문화한 「반인종 차별법안」을 통과시킴⁶⁷⁾
 - 즉 이미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만한 강력한 ‘채찍’은 존재하지 않았음⁶⁸⁾
 - 이 같은 남아공에 대한 외국인 투자철회와 강화된 금융·재정적 압박은 남아공의 경제난을 급격하게 악화시킴
- 한편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는 1989년 9월에 당선된 드 클러크(De Klerk) 대통령에 의해 진행됨
- 드 클러크는 취임 후 핵무기 제조와 농축실험의 중단을 명령을 하는 한편, 남아공 원자력위원회 고위 관리, 남아공의 군수산업체인 ARMSCOR, 그리고 국방부 관리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 기존 핵 개발 프로그램과 조립된 핵무기의 폐기를 심의하도록 요청함⁶⁹⁾
 - 결국 1990년의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와 1991년의 핵무기 폐기를 통해

66) 장성욱, 200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 및 해체 사례 연구”, 「동아시아연구」, 제11호, p. 135.

67) 위의 글, p. 136.

68) Paul Doty and Steven Flank, 1993, "Arms Control for New Nuclear Nations," in Robert D. Blackwill and Albert Carnesale eds, *New Nuclear Nations: Consequences of U.S. Policy*,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p. 63

69) T. V. Paul, 앞의 글, p. 116.

남아공은 비밀리에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음

- 이 시기 1988년 12월 앙골라로부터 쿠바군의 단계적 철수를 위해 남아공, 앙골라, 쿠바가 3자 협정을 체결했고, 1989년에는 남아공이 나미비아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남부 아프리카의 안보상황은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됨
- 즉 냉전의 종식으로 주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전면적 공격’이라는 위협인식에 근거한 남아공의 안보전략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음⁷⁰⁾
- 이에 대해 드 클러크는 이러한 긍정적인 안보환경의 변화에 의해 “핵능력은 불필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남아공의 국제관계 개선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음

나. 소련연방의 해체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및 포기 사례

- 1991년 러시아 의회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쿠데타가 불발로 그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발생한 문제 중의 하나는 소련 영토 내에 배치되어 있던 3만여 개에 달하는 전술 및 전략 핵무기들의 처리문제였음
- 1991년 국민투표를 통해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에는 이전까지 소련연방이 보유해온 1,900개의 전략핵무기와 2,650~4,200개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음⁷¹⁾
- 1991년 12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지도자들과의 알마티 회담을 통해 자국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함⁷²⁾

70) 위의 글.

71) Joseph Cirincione et. al, 앞의 글, p. 373.

- 또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전술핵무기를 1992년 7월까지, 그리고 전략핵무기를 1994년 연말까지 러시아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함⁷³⁾
-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술핵무기 이전은 1992년 초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됨.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전술핵무기 이전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부터 우크라이나의 핵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됨
- 구체적으로 1992년 11월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포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1993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여부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 주장함
 - 1992년 구소련연방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더불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의 이행을 위한 리스본 의정서에 서명했음
 - 리스본 의정서 제5조에 따르면 러시아를 제외한 3개 승계국가(successor states)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비핵국가로서 NPT에 가입하기로 되어 있었음⁷⁴⁾
 - 의정서 체결 당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핵무기의 보유 권리와 부담은 전적으로 러시아에게 있음을 문서형태로 동의하였음⁷⁵⁾

72) NTI, Ukraine Profile, Nuclear Chronology <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Ukraine/Nuclear/5519_6302.html>

73) Mitchell Reiss, 앞의 글, p. 93.

74) Joseph Cirincione et al., Cirincione, Joseph, Jon B. Wolfsthal, and Miriam Rajkumar, 2005, *Deadly Arsenals: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Threats*, 2nd edition,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 409.

75)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93, "Statement Dated 4 August 1993 by

- 뿐만 아니라 1993년 6월 쿠추마(Kuchma) 우크라이나 수상은 핵무기 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잠정적인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함
- 또한 1993년 11월 우크라이나 의회(Rada)는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전략 및 전술핵무기의 일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나머지 핵무기의 이전 여부는 핵무기 폐기 비용 지불, 핵탄두로부터 추출된 핵물질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안전보장의 제공에 달려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킴⁷⁶⁾
-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는 압박정책으로 대응함
 -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를 악의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묘사하는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석유와 가스의 가격을 170차례 인상하고 수차례 연료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으로 맞대응함⁷⁷⁾
- 이 같이 우크라이나가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러시아로부터의 안보위협과 핵 폐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경제지원 요구라는 두 가지의 요인인 것으로 주장됨⁷⁸⁾
-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이전에 따르는 경제적 보상과 안전보장의 요구를 핵무기 이전과 연계시키면서 발생한 갈등은 미국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FCIRC/421*. <<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Numbers/nr401-450.shtml>>

76) Joseph Cirincione et al., 앞의 글, p. 374.

77) Mitchell Reiss, 앞의 글, p. 101.

78) Mitchell Reiss, 앞의 글, p. 102.

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됨

- 클린턴 행정부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고립시킨다는 이전 부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음
- 1994년 중반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대 우크라이나 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핵 폐기 지원, 경제지원,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 안전보장 등의 유인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조기 핵 폐기 이행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음
- 이러한 미국의 중재 노력은 1994년 1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3자 협정(Trilateral Agreement)으로 결실을 맺게 됨. 3자 협정문에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안전보장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⁷⁹⁾
- 그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비핵국가로서 NPT에 가입하게 될 경우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을 존중함
-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력 사용 또는 위협 및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위협에 처해있을 경우 즉각적인 UN안보리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을 약속함
- 이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포기의 제반 조치를 받아들이며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전환됨⁸⁰⁾
- 이 같은 조치는 1993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제공하는 ‘협조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이하 CTR)⁸¹⁾에 의거해

79) 위의 글, p. 116.

80) NTI, *Ukraine Profile*, Nuclear Overview,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Ukraine/Nuclear/index.html>

진행됨

- 우선 1994년 NPT에 가입하는 한편 1996년까지 우크라이나의 모든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함
- 또한 2002년 까지 우크라이나에 있던 모든 전략포와 대륙간 미사일도 러시아로 이전되거나 파괴됨

다. 리비아의 핵무기 보유시도와 포기

- 1975년 가다피(Qadhafi)는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에 가입한 NPT를 탈퇴하지 않았으나, 집권직후 가다피는 이스라엘에 대응할 수 있는 핵개발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⁸²⁾
- 그러나 리비아의 핵관련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의 도움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함

81) 본 프로그램은 넌 루가 프로그램(Nunn-Lugar program)으로도 불리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에 배치된 구소련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면서 핵 과학자 및 기술자 교육과 재취업, 상당한 금전적 보상,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안전보장 등을 획득함. CTR 프로그램은 ‘무기’, ‘저장소’, ‘물질’, ‘인력’ 등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을 추구함. 첫째, 핵 및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함. 둘째,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무기를 이전, 저장, 불능화, 안전조치를 취함. 셋째, 대량살상무기, 부속품, 물질 등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검증 가능한 보호조치를 취함. 넷째, 타국의 무기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이전을 저지함. Sharon Squassoni, 2004, “Globalizing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 Survey of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p. 14; 전봉근, 2008, “북핵폐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현대북한연구」, 제11권, 1호, pp. 88-113

82) NTI, "Libya Profile", Nuclear Overview,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libya/3939.html>

- 1970년 중국으로부터 핵무기를 구입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1978년에는 인도의 핵무기 구입을 시도했음
- 또한 같은 시기에 파키스탄으로부터 핵개발지원을 받기 위해 리비아는 파키스탄이 리비아 근접국인 나이제르(Niger)로부터 우라늄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 뿐만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핵반응로 구입을 시도했음
- 이 같은 시도는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 1982년에는 벨기에로부터 핵개발 시설을 확보하려 했으나 미국 측이 1984년 벨기에 측에 압력을 가하여 리비아로 핵개발 시설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또한 1986년 베를린 나이트클럽 폭발테러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은 트리폴리 공습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팬암기 폭파사건으로 강도 높은 대리비아 제재조치를 가함
- 1986년 리비아 자산동결과 리비아와의 모든 상업거래 중단을 담은 추가 제재조치를 취함
- 이 같은 제재조치는 리비아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쳐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함
- 1990년대 들어 소련상황이 불안해 지면서 리비아는 이를 틈타 소련의 핵개발 기술자를 받아 들여 지속적인 핵개발을 시도함
-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칸(Abdul Qadeer Khan) 박사의 국제 핵 밀매 조직을 통해 원심분리기 완제품과 부품들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핵개발 계획을 진행시킴

- 리비아는 1997년에 20개의 완성된 P-1 원심분리기와 2백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수입했으며, 2000년에는 매년 최대 10개의 핵무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P-2 원심분리기 1천개를 주문했음⁸³⁾
- 1980년대부터 테러리즘 활동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뒤로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억지수단으로 핵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짐⁸⁴⁾
- 이 시기에 미국측은 1996년 이란과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저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란·리비아 제재법 (Iran·Libya Sanction Act: ILSA) 등을 동원하여 리비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⁸⁵⁾
- 한편 리비아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펜암기 폭파사건 용의자 2명을 인도하고 비재래식 무기에 관해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미국에 타진하지만 미국은 이에 냉담하게 반응함⁸⁶⁾
- 또한 리비아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부시 행정부까지 미국과 비공식 접촉을 하였으나, 미국이 펜암기 폭파사건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함께 요구함으로써 양국 간의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음

83) 위의 글, pp. 108-109.

84) 이 같은 리비아의 비밀 핵개발 계획은 2004년 2월 칸 박사가 국제 핵 밀매조직을 통해 리비아, 이란, 북한에게 핵개발을 지원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밝혀짐. Gordon Corera, 2006,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A. Q. Khan Net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08.

85) 박영호, 2004, “경제제재 해제 이후 리비아 경제환경 변화와 시사점”, 『수은 해외경제』, 제23권, 제10호, p. 23.

86) Gordon Corera, 앞의 글, p. 179.

- 그러다가 리비아는 1999년 4월 팬암기 폭파 혐의자 2명을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인도하고, 팬암기와 UTA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거액의 보상에 동의함
- 리비아가 팬암기 용의자를 인도하자 UN 제재 조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었고, 4년 후인 2003년 9월에 대 리비아 UN 경제제재 조치가 공식 해제됨
- 팬암기 폭파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재판은 두 명의 폭파 혐의자에게만 해당되며, 리비아 정부가 폭파사건에 관여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리비아측에 보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⁸⁷⁾
- 리비아는 미국과의 더 큰 협상을 위해 영국의 중재를 부탁했고, 이에 따라 2002년 8월 영국의 외무장관 마이크 오브라이언은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보상으로 받는 내용의 거래를 부시대통령에게 전달하여 승인을 받아냄⁸⁸⁾
- 미국은 2004년 9월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한 제재조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제재를 해제했으며, 2006년에는 미국무부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관계정상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리비아는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보통 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87) Clyde R. Mark, 2002, "Libya", *CRS Report for Congress*, p. 2

88) Gordon Corera, 앞의 글, p. 180.

3. 핵문제 해결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가. 핵무기 보유 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문제 해결방식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체적 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인도의 경우는 민간 핵시설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리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군사적 핵시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임
 - 파키스탄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사용 불가능하도록 해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미국측에 공개함은 물론,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문제 해결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⁸⁹⁾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미국 측이 이러한 해결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낮음
 - 첫째, 북한의 핵 개발은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무기와 달리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는 점임
 - 둘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인도나 파키스탄과 달리 미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함
 - 가령 인도의 경우는 인구 11억의 대국이고 중국을 견제해 세력균형을

89) Victor D. Cha(2009), 앞의 글; 채규철, 2008, “북한의 비핵화 추구 전략과 북-미관계의 전개”, 「국제문제연구」, p. 44.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의 경우도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전에 있어서 주요한 동맹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셋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내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NPT 체제 붕괴와 미국의 리더십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임

나. 핵무기 포기 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 핵무기 포기 사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번째 형태는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미국과 러시아 등이 제공하는 CTR 프로그램에 따라 핵무기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안보보장, 그리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전환 및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재취업까지 보장되는 방식임
 - 두번째 형태는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로서 ‘선 핵포기, 후 보상’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리비아의 가다피 처럼 독재체제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해 주는 방식임
 - 세번째 형태는 남아프리카 사례처럼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하는 방식임
- 앞서의 핵문제 해결방식 중에서 북한 적용 가능성이 가장 낮은 형태는 남아공의 사례로 평가됨
 - 남아공의 사례가 북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통해 스스로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는 행동이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북한 스스로의 체제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리비아 방식도 적용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⁹⁰⁾
 - 첫째는 리비아의 경우는 세계 6-7위 산유국으로 미국내 주요 석유회사들이 부시로 하여금 가다피와의 타협을 중용하였음. 북한에는 이 같은 미국의 경제적 이해사항이 없음
 - 더군다나 가다피는 북한처럼 자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중국과 같은 국가가 없으므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불안감을 느끼고 핵개발을 포기했음
 - 뿐만 아니라 리비아의 경우는 핵무기 실험을 하거나 실제로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을 획득하지 못했음
 - 이와 더불어 리비아의 안보에 핵무기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⁹¹⁾
- 따라서 현재까지 발생한 주요한 핵문제 해결사례로 볼 때, 우크라이나 핵문제 해결방식의 북한 적용가능성이 가장 높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일정 수준을 넘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핵개발과 관련한 제반 시설 및 기술자와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함
 - 또한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북한도 핵무기 포기에 따른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적용된 CTR 방식의 적용 가능성이 높음

90) 홍현익(2008), 앞의 글, pp. 66.

91) Sharon Squassoni, p. 26.

- 실제로 CTR은 지난 1994년 10월에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의해 진행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사업을 통해 적용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가령 지난 2005년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은 CTR의 지지자로서 루거(Richard Lugar)의원과 재래식 무기의 폐기에 이 방식의 적용을 염두에 둔 ‘오바마-루거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음⁹²⁾
- 그러나 이 같은 형태가 북한에 순조롭게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첫째, 이 같은 유형을 북한이 따르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초래될 수 있는 개혁과 개방정책,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함
- 둘째, CTR을 받아들일 경우 자국의 핵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⁹³⁾
- 셋째,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검증하기 쉽지 않음. 특히 핵물질에 대한 정보는 찾기 쉬우나, 핵무기 생산 및 제조, 그리고 보관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음⁹⁴⁾

92) 전봉근, 2009,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북한판’ CTR 구상”, 「국제정세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과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pp. 1-38.

93) Sharon Squassoni, 2004, "Globalizing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 Survey of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p. 25.

94) Sharon Squassoni, 앞의 글, p. 27.

V. 시사점과 대응방향

1. 시사점

-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이를 둘러싼 제 쟁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던 인도·파키스탄·남아공·리비아·우크라이나 등의 핵문제 해결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협상’과 ‘강제’의 방식을 혼합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
 - 비록 오바마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엇갈린 주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
 -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에 미국이 핵실험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한 이후, 해당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등의 사례에서는 끝까지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음
 - 둘째,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축협상’ 형태로 미국이 북핵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은 낮음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러시아나 중국처럼 대등한 국가관계가 아니라 리비아나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제재나 유인책을 동원하여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국가에 불과함

-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여 미국의 의도를 관철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임
- 셋째, 북핵문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임
 - 가령 인도나 파키스탄에 비해서 해결이 수월했던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3년여에 걸친 협상과정과 2년여의 비핵화과정이 필요했음
 - 그리고 인도의 경우도 3년 이상의 협상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협정에 도달했음
 - 이에 반해 북핵문제는 아직 협상과정에 돌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입장조차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이, 일단 대화국면에 들어선 것에 불과함
 -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이 오바마 정부 임기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선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음
- 넷째,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리비아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그 해결과정에서 영국이나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의 안보문제에 중요한 사항임
 -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임
 - 이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CTR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중국과의 협조체제하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2. 우리의 대응방향

-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을 둘러싼 제 쟁점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임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임
 - ◆ 즉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의 목표가 말 그대로 완전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핵능력 보유(즉, 비확산을 전제로 무기화에는 이르지 못한 핵능력 보유)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한·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면 북핵 위기관리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이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불완전한 핵 포기’를 타협안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가진 1~2개의 핵무기가 미국에게는 위협이 아닐지 몰라도(확실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상황을 장악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북핵문제의 대처방안과 중장기적인 대처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 단기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과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6자 회담’의 틀로 복귀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위해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 CTR 프로그램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미국의 대응사례와 최근의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CTR 프로그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예상가능한 CTR 프로그램들을 상정하여 개별 프로그램별로 우리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방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근식·서보혁, 2007, “대북포용정책과 강경정책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pp. 105~127.
- 김명진, 2006, “최근 미·인도 협력관계 구축동향”, 「주요국제문제분석」
- 김태우, 2004, “북핵문제의 본질과 6자 해법”, 「행정논집」, 제30권, pp. 35~63.
- _____, 2005, “이란 핵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67권, pp. 79~106.
- _____, 2006, “미-인도 핵합의, 새로운 핵문제의 서막”, 「북한」, 413호, pp. 68~76.
- 박영호, 2004, “경제제재 해제 이후 리비아 경제환경 변화와 시사점”, 「수은 해외경제」, 제23권, 제10호, pp. 20~39.
- 서보혁, 2003,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정체성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제1호, pp. 199~217.
- 신성택, 2009, 「북핵리포트」, 서울, (주)뉴스한국.
- 신재곤, 2006, “핵무기 개발 태동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합참」, 제21호, pp. 12~24.
- 윤여길, 2007, “북한은 20kt급 핵탄두 최소 10-25개 보유추정”, 「한국논단」, 제209호, pp. 18~25.
- 이삼성, 1994,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외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4권, 제2호, pp. 181~212.
- 이상현, 2006, “미국-인도 핵 협력과 강대국 신전략구도”, 「정세와 정책」, 제4호, pp. 6~9.
- 이승철·오일환, 2006, “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한국의 대북·대중·대러시아 전략 방향 모색”, 「중소연구」, 제29권, 제4호, pp. 15~46.

- 장성욱, 200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 및 해체 사례 연구”, 「동아시아연구」, 제11호, pp. 125~141.
- 전봉근, 2009,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북한판’ CTR 구상”, 「국제정세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과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pp. 1~38.
- 전성훈, 2008, “김정일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 핵문제”, 「KDI 북한경제 리뷰」, 제10권, 제9호, pp. 3~15.
- 채규철, 2008, “북한의 비핵화 추구 전략과 북·미관계의 전개”, 「국제문제연구」, 제8권, 제3호, pp. 31~58.
- 허문영, 2002, “북한의 핵개발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대미협상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세분석 2006-4」.
- 홍현익, 2008,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1호, pp. 35~76.
- 황주호·문주현, 2008, “북한의 핵능력 증대전망과 대책”,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pp. 9~27.
- Albright, David et. al., 1997,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1996: World Inventories, Capabilities, and Policies. SIPRI Monograph,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London, Oxford Univ. Press.
- Arms Control Association, 2008, Revised Indo-U.S. NSG Draft.
- Blackwill, Robert D. and Albert Carnesale eds., New Nuclear Nations: Consequences of U.S. Policy,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 Bradner, Stephen, 2001, "North Korea's Strategy." Henry D. Sokoloski, ed., Planning for a Peaceful Korea,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Campbell, Kurt and Robert J. Einhorn. 2004. "Concluding Observation", Kurt

- M. Campbell, Robert J. Einhorn, Mitchell B. Reiss, eds., *The Nuclear Tipping Point: Why States Reconsider Their Nuclear Choic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08,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 Cha, Victor D., "What Do They Really Want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4., pp. 119~138.
- Chengppa, Raj, 2000, *Weapons of Peace*, India, HarpenCollins Pub.
- Cirincione, Joseph et al., 2005, *Deadly Arsenals: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Threats*, 2nd edition,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Cohen, Ariel, 2009, "Dangerous Trajectories: Obama's Approach to Arms Control Misreads Russian Nuclear Strategy", *Backgrounder*, No. 2338. The Heritage Foundation.
- Corera, Gordon, 2006,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A. Q. Khan Net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onin, Richard P. et. al., 2005, "Pakistan's Nuclear Proliferation Activitie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U.S. Policy Constraints and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 Gerson, Michel S., 2009, "Rethinking U.S. Nuclear Postur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Grotto, Andrew and Joe Cirincione, 2009, "Orienting the 2009 Nuclear Posture Review", *Arms Control Today*, Arms Control Association.
- Haass, Richard N. and Morton H. Halperin. 1998. "After the Tests: U.S.

Policy Toward India and Pakist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orton III, Roy E., 1999, "Out of (South) Africa: Pretoria Nuclear Weapons Experience", USAF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Paper #27.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93, "Statement Dated 4 August 1993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FCIRC/42

Kerr, Paul K. and Mary Beth Nikitin, 2009, "Pakistan's Nuclear Weapons", CRS Report for Congress.

Kerr, Paul K., 2009, "U.S. Nuclear Cooperation with India", CRS Report for Congress.

Klingner, Bruce, 2007, "North Korea Nuclear Weapons Falls Short", Web-Memo, No.1358, The Heritage Foundation(ed.).

Mark, Clyde R.. 2002, "Libya", CRS Report for Congress.

Nossel, Suzanne, 2004, "Smart Power." Foreign Affairs (March/April).

Paul, T. V., 2000, Power Versus Prudence: Why Nations Forgo Nuclear Weapons.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 Press.

Reiss, Mitchell, 1995,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Rennack, Dianne E., 2003, "India and Pakistan: U.S.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Sigal, Leon V., 2009, "A Strategy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une 11.

Squassoni, Sharon, 2004, "Globalizing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 Survey of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Stuenkel, Oliver, 2009, "More than a dream? Obama's vision of a nuclear arms-free world," Konrad Adenauer Stiftung.

Stumpf, Waldo, 1995, "Birth and Death of the South African Nuclear Weapons Programme." presentation given at the conference "50 Years After Hiroshima", organized by Unione Scienziati per il Disarmo and held in Castiglione della Pescaia, Italy.

Wagner, Alex, 2001, "Bush Waives Nuclear-Related Sanctions on India, Pakistan," Arms Control Today, Vol. 31, No. 8.

【 신문 및 웹사이트 】

「연합뉴스」(2009년 04월 07일)

「연합뉴스」(2009년 11월 11일)

「연합뉴스」(2009년 11월 14일)

「에너지 타임즈」(2008년 12월 09일)

New York Times(July 7, 2009)

The Wall Street Journal(November 19, 2007)

미 국무부 웹사이트, <<http://www.state.gov>>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웹사이트, <<http://www.iie.com>>

Working for a Safer World 웹사이트, <<http://www.nit.org>>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	김종연 최준영
제2호	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	김종연 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	김영일 신종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	김준 외 7인
제7호	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	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	김준 외 7인
제1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2008.12.11	정민정 김남영
제13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	김준 배민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충렬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호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	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	김종갑 외 3인
제22호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	유재국 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	임동춘 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	이만우 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제35호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2009. 9. 3	이현출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6호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009. 9.22	정민정 김상욱
제37호	미국하원의 발언관련 규범	2009. 9.28	전진영
제38호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28	김남영
제39호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09.10.15	유해미
제40호	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대응	2009.10.16	이만우 허종호
제41호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2009.10.20	박충렬 정민정
제42호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09.10.21	김 준 최준영
제43호	희유(稀有)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0.27	김경민 신가은
제44호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 미국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	2009.11.10	정환규
제45호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1.12	전진영 김선화 이현출
제46호	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	2009.11.20	원시연
제47호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과 쟁점	2009.11.27	김여라
제48호	‘7.7 DDoS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방안	2009.12.1	배성훈
제49호	한-인도 CEPA의 인력유입효과 제고방안	2009.12.3	정민정
제50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2.9	박영원
제51호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2.10	조주은
제52호	와이브로(WiBro)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09.12.15	김유향
제53호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9.12.16	장영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54호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2009.12.17	하혜영 유규영
제55호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과제	2009.12.18	박준환
제56호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2009.12.22	전진영
제57호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2009.12.23	전은경 이상은 김봉주

현안보고서 제58호

발 간 일 2009년 12월 24일
발 행 임종훈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자료마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0633-14

© 국회입법조사처, 2009

현안보고서 제58호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

